

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노동복합시설(가칭)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에 근거하여 민간위탁(신규)으로 운영하고자 함
- 나.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을 집약화하여 전문인력(노무사, 전시 큐레이터 등)이 확보된 전문단체에 민간위탁(신규)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(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), '적정'한 것으로 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- 시설명 : 노동복합시설(가칭)
 - 소재지 : 종로구 관수동 152-1
 - 시설규모 : 2,062.24㎡(지상1층~5층)
 - 준공일자 : 2018년 상반기(예정) ※2018년 상반기 개관 예정
 - 이용대상 : 시민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8.3.1. ~ 2021.2.28.)
- 위탁업무
 - 노동복합시설 시설물 관리(경비, 청소, 설비)
 -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전시관 운영, 노동교육장 운영 등
- 소요예산('18년) : 1,267,000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노동복합시설(가칭)은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을 집약화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
- 전문인력(노무사, 전시 큐레이터 등)이 확보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제11조(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)

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(안) 제출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길민하 (☎ 2133-5426)